

보도참고자료



2014년 12월 24일(수) 배포

심판관리관 송무담당관

수신 즉시 보도 가능

담당과장: 안병훈(044-200-4153)

담당: 김재진 사무관(044-200-4157)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

- 대법원,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 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건설사를 제재한 공정위 처분이 정당함을 재확인 -

- 대법원은 2014년 12월 24일, 현대건설(주)이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 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지분율 및 공구 배분을 합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220억원)을 부과한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음.

※ 같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지난 2014. 9. 24. 경남기업(주) 1개사, 2014. 10. 27. 대림산업(주) 등 3개사, 2011. 10. 30. (주)대우건설 등 3개사, 2014. 11. 13. 에스케이건설(주) 등 5개사에 대한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음

- 현재, (주)한진중공업 및 금호산업(주)에 대한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음.

< 별첨 > 4대강 살리기 1차 턴키 공사 입찰 관련 소송현황

※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2012년 6월 5일자 보도자료 참조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별첨>

4대강 살리기 1차 턴키 공사 입찰 관련 소송현황

(단위 : 백만원)

원 고	시정명령 등	과징금	고법결과 (선고일)	대법결과 (선고일)	비고
대림산업(주)	시정명령	22,548	승소 (14.6.13)	승소 (14.10.27)	
현대건설(주)	시정명령	22,012	승소 (14.4.24)	승소 (14.12.24)	
지에스건설(주)	시정명령	19,823	승소 (14.6.13)	승소 (14.10.27)	
에스케이건설(주)	시정명령	17,853	승소 (14.6.13)	승소 (14.11.13)	
삼성물산(주)	시정명령	10,384	승소 (14.6.13)	승소 (14.11.13)	
(주)대우건설	시정명령	9,697	승소 (14.6.13)	승소 (14.10.30)	
현대산업개발(주)	시정명령	5,047	승소 (14.7.9)	승소 (14.11.13)	
(주)포스코건설	시정명령	4,177	승소 (14.7.9)	승소 (14.11.13)	
계룡건설산업(주)	시정명령	-	승소 (14.6.13)	승소 (14.10.27)	
(주)한화건설	시정명령	-	승소 (14.6.13)	승소 (14.10.30)	
경남기업(주)	시정명령	-	승소 (14.4.24)	승소 (14.9.24)	

쌍용건설(주)	시정명령	-	승소 (14.5.30)	-	소 취하
코오롱글로벌(주)	시정명령	-	승소 (14.6.13)	승소 (14.11.13)	
동부건설(주)	경고	-	승소 (14.6.13)	승소 (14.10.30)	
두산건설(주)	경고	-	승소 (14.7.9)	-	원고 상고 포기
롯데건설(주)	경고	-	패소 (14.4.24)	패소 (14.9.4)	
(주)한진중공업	시정명령	-	일부승소 (14.7.9)	계류중	고법 : 담합 인정 (주문 일부 취소)
금호산업(주)	시정명령	-	일부승소 (14.7.9)	계류중	고법 : 담합 인정 (주문 일부 취소)